

## 총 무 쳐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720-4097

문서번호 : 조기 12210-14

시행일자 : 1994. 1.  
(제 1 약)

## 받는곳 : 내부결재

제 목 : '94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 (국무총리지시자 994-6 호)

취급		장 관	국무총리
보존			
차관	沈	Seon	李
국장	文	Yun	이정국장
과장	李	Lee	조사담당
기안	서필언	Chul	협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94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통보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94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 (제 2 약)

## 받는 곳      받는 곳 참조

제 목 , 94 정부조직관리지침 토보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 정부 조직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94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받는 곳 가 (-01~04, 56. 57), 나 (01~18), 다 (01~18)

(제 3 안)

## 받는곳 받는곳 참조

제 목 '94 정부조직관리지침 토보

\* 94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불임과 같은 품종보합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94 전부조직관리지침 1부

받는 곳 가 (01~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자료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卷之三

	실장	재가문서요약전	
조정관			

국무총리실

'94 정부조직관리지침

◦ 공무원 정원의 동결기조 정착

- 교원을 제외한 전 국가공무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
- 각 부처는 현 정원 범위내에서 직제개정을 자율 추진하되 조속한 마무리

◦ 거시적 조직관리를 위한 분야별 종합조직진단 실시

- 일반, 경제, 사회·문화의 3개 분야 대별 ('94:경제분야)

◦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도모

◦ 국가기능의 지방이관 및 민간위탁의 지속적 추진

199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1994. 1

총 무 처

## '94년도 조직관리 기본방향

- 금년은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로서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 국제화·개방화·정보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부기능과 역할 재정립』
  - 정원 동결기조 유지로 봉사는 크고 비용은 저렴한 『강력하고 간소한 정부 구현』
  - 과도한 규제 등 조직내부의 비능률과 낭비요소의 발굴, 혁신을 통한 『생산성 높은 조직체계 구축』에 조직관리의 중점을 둘 계획임.

## '94년도 정부조직관리 세부지침

### I. 조직 관리

1

#### 공무원 정원의 동결기조 정착

국무총리훈령 제272호 ('93. 3. 11)에 의한 『정부조직 및 정원에 관한 한시적 동결조치』를 '94년도에는 『지속적인 동결기조』로 전환하여 교원을 제외한 전 국가공무원 정원을 현수준으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부처는 국제화·개방화등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 정원을 상계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직제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 각 부처는 직제개정안 작성시 다음 기준을 최대한 반영도록 하고, 총무처는 직제심사시 직제개정기준의 반영여부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한다.

#### < 직제개정기준 >

-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증원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능은 폐지 또는民間이양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기구 및 인력을 정비한다.  
※ 정부기능총람 ('94. 1월 총무처 발간) 참고
  - 업무의 중요성이 감소되었거나, 행정전산화·처리절차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행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구 및 기능은 철저히 축소 조정한다.
  - 유사·중복되거나 비능률적 조직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개편한다.
  -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민서비스 확충 및 미래행정수요분야의 기능은 최대한 보강하되, 규제완화등 불필요분야의 감축인력으로 대체·충당한다.
- 각 부처는 이러한 조직개편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총무처는 불필요한 인력의 감축 등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 거시적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분야별 조직진단실시

- 정부조직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을 업무성격에 따라 행정분야별로 구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 일반행정분야, 경제행정분야, 사회문화행정분야 등 3개분야로 대별
  - 매년 1개분야씩 집중적인 진단을 통하여 전행정분야를 3년주기로 종합진단실시
- \* 개정된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 참조

### 가. 조직진단 실시

- '94년도 조직진단대상은 경제행정분야로 하며, 총무처의 주관하에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시행한다.
- ※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무진단과 병행실시

#### 일반행정분야

: 통일원,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 경제행정분야

: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교통부, 체신부

#### 사회문화분야

: 환경처, 국가보훈처,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 조직진단결과를 토대로 보강·감축·현상유지분야로 구분 관리함으로써 행정수요와 연계된 분야별 종합정원관리대책을 수립한다.
  - 이러한 조직진단결과는 각부처의 직제개편시 우선 반영토록 하며, 행정분야별 기능조정 및 인력 재배분에 활용한다.
  - 기능의 개선뿐 아니라 기능의 존폐여부를 중점 재검토하여 행정수요 감퇴분야의 기구·인력을 신규행정수요분야로 적극 전환토록 한다.

#### 나. 조직개선평가제도 도입

- 총무처는 부처별 자체인력 절감노력, 인력의 상계활용 실적, 기능합리화 수준등을 종합평가하는 조직개선평가제도를 검토, 도입하여 조직관리 및 포상등에 반영토록 한다.

## 탄력적 조직관리제도의 적극 활용

기존 기구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도록 한다.

\* 개정된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7조의2 및 제27조  
참조

### 가. 기관간 정원의 상호 이체활용

- 일시적이거나 비정규적인 새로운 업무의 발생시 소속기관간 또는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는 정원을 이체·활용하여 이에 적극 대처하도록 한다.  
\* 직제상 직위를 가지고 있는 정원은 이체·활용대상에서 제외

### 나. 한시조직 운영 활성화

-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과단위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시조직제도를 적극 활용도록 하고 직제개정요구는 원칙적으로  
유보한다.
- 한시조직에 소요되는 인력은 당해부처 총정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이체·활용도록 한다.

4

##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사전협의

정부조직관리의 장기예측을 가능케하고, 정부조직의 팽창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인력증원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총무처와 사전협의토록 한다.

\* 개정된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9조의2 참조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제·개정, 청사의 신·개축 또는 시설·장비의 도입 등으로 기구의 신설이나 증원이 예상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의 제·개정 또는 당해사업의 시행을 위한 예산요구시에 당해사업의 필요성과 기구·인력의 소요에 관하여 총무처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 총무처장관은 협의를 받은 경우 당해사업의 필요성 및 기구·인력의 소요규모를 검토하고 기구·인력의 증원소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확보방법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당해기관에 통보한다.
- 이 제도의 시행전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각부처의 장은 '94. 2월말까지 총무처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5

## 『과장보좌 4급공무원제도』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과장보좌 4급공무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한다.

\* 개정된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3조의2 참조

- 각 부처는 『복수직급제 시행에 따른 인사운영지침(‘94.1.17)』을 철저히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총무처는 이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

## 정부산하단체 조직관리

- 각 부처는 『정부 및 정부산하단체 조직관리 강화에 관한 훈령』(국무총리훈령 제259호 '92.4.9) 및 『정부산하단체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조기 01210-177, '92.9.7)을 철저히 이행토록 한다.
- 총무처는 정부산하단체 관리대상을 정부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단체로 국한하여 산하단체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 정부산하단체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공무원 정원동결기조에 준하여 기구증설이나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토록 한다.

## 7 위원회 관리

### 가. 위원회 운영 기본방침

#### (1) 위원회의 명칭

-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심의회』 명칭을 사용하며, 기관내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령 또는 훈령으로 자문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협의회』 명칭을 사용한다.
-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존의 위원회중 『위원회』 또는 『심의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는 최초 법령개정시, 부령 또는 훈령으로 설치된 위원회중 『협의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 명칭을 변경도록 한다.

#### (2) 위원회 설치

-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지 아니하며,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등은 위원회 설치규정에 반드시 그 존속기간을 명시, 한시적 위원회로 설치 운영토록하고, 관계부처간의 단순한 업무협의·의견교환등을 위한 위원회는 협의체 또는 회의체 운영 등으로 대체한다.
- 위원회 설치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한다.

### (3) 위원회 규정의 제안

- 정부조직법 제4조에 근거한 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설치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제안한다. 다만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개정등 특별한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제안할 수 있다.

### (4)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 시민운동단체 대표를 비롯한 민간인 및 여성들을 위원으로 적극 위촉하여 국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한다.
- 필요이상 고위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한다.

## 나. 위원회 정비

- 총무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위원회에 대하여, 각부처는 부령 이하로 운영하는 협의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분석하고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 '94년도에는 '93년도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의 조속한 법령조치와 아울러 대통령 및 국무총리소속 위원회의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적합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사실상 관장하는 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는 폐지하며, 국무회의·차관회의·경제장관회의·경제차관회의등 통상적인 정책·심의·조정기구의 활용으로 대체도록 한다.

※ 대통령소속위원회 : 11개, 국무총리소속위원회 : 32개

## II. 지방이관(지방위임·지방이양) 및 민간위탁

1

###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

각부처는 『정부기능총람』 및 『중앙·지방사무총람』을 토대로 정부기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방이관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적극 발굴한다.

\* 민간이양 대상사무도 적극 발굴, 각부처 자체개정시 반영한다.

- 지방이관 대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하여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관 희망사무를 전면적으로 조사·제출도록 한다.
- 권한을 원천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는 지방이양은 『사무구분 판단기준』(19 ~ 20페이지 참조)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 ※ 지방이양 대상사무 예시

- 『중앙·지방사무 총람』에 수록된 기관위임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사무
-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사무로 예시되어 있으면서 개별 행정작용법령에 의하여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
-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결과 이양을 희망하는 사무(단, 이양완료 또는 동의된 사무 및 전년도 제출했던 이양희망사무 제외 : 목록 2)

- 민간위탁 및 민간이양 대상사무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적극 발굴도록 한다.

2

## 지방이양 확대기반 조성

- 총무처는 지방이양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 당해분야 기능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확대발굴한다.
  - 특히 교통·사회복지 등 지역주민의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한다.
  - 중점추진 분야별 지방이양대상 발굴 및 이양추진 사업을 연차적,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분야별 검토결과를 지방이양 대상발굴 뿐만아니라 민간위탁 및 정부기구 인력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법제처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자치단체사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령 규정형식을 강구하고, 각 부처는 총무처가 확정한 중앙. 지방사무구분 (『중앙. 지방사무총람』 참조) 및 연도별 이양확정 대상사무에 따라 법령을 개정할 경우, 법제처의 새로운 법령규정형식에 따른다.

## 사전·사후관리체제 강화

- 각 부처는 이미 시달된 『행정권한 위임·위탁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11호, '91.7.9)에 따라 사전·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유의도록 한다.
  - 지방위임시 관련사무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일관 위임함으로써, 관련된 기능의 일부 미위임으로 인한 업무처리체계의 불합리와 국민불편을 최대한 해소도록 한다.
  - 중앙행정기관은 위임업무에 대한 부당한 사전통제를 최대한 지양한다.
  - 민간에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기관이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지원을 철저히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이관받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절차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처리가 되도록 한다.

### III. 행정사항

1

#### '95년도 소요정원 심사

- '95년도 소요정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분야에 국한하여 심사할 계획이니 해당부처는 '94. 4. 30까지 소요정원(안)을 총무처로 제출하도록 한다.

##### 소요정원제출 대상분야

- i)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의2(기구개편이 수반되는 사업등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총무처와 사전협의가 된 사항
- ii)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 iii) 교원 및 시설·장비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2

#### '93년도 정비대상위원회의 법령조치 조속 추진

- 정비대상위원회중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94. 12월말까지 정비하되, '94년중에 당해 법률개정이 없을 경우는 최초법률개정시 정비도록 하고, 대통령령이하에 근거한 위원회는 '94. 6월말까지 정비도록 한다.

※ 미조치 위원회 현황 (34개)은 <목록1> 참조

## 가. 지방이양분야

- 각 부처는 '91 ~ '93년도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시 지방이양 추진대상사무로 확정된 사무(목록2)는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총무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각 부처는 이양사무 추가발굴 대상에 대한 이양여부 검토결과를 <붙임 1.2호 서식>에 작성하여 '94. 3월말까지 총무처(조직국 조사담당관실)로 제출하기 바람.
- 내무부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사무중 지방이양 희망사무를 <붙임3호 서식>에 작성하여 '94. 3월말까지 총무처(조직국 조사담당관실)로 제출하기 바람.
  - 이양완료 또는 동의된 사무 및 전년도 제출했던 이양희망사무 제외
- 각 부처는 사후관리지침에 따른 이행사항을 <붙임 4호서식>에 작성하여 매반기별 (6월말, 12월말)로 총무처(조직국 조사담당관실)에 제출하기 바람.

#### 나. 지방위임 및 민간위탁분야

- 각 부처는 다음의 위임. 위탁추진대상사무 및 그 조치계획을 <붙임5호 서식>에 작성하여 '94. 3월말까지 총무처(조직국 조직기획과)에 제출하기 바람.
  - '91년도 감사원의 지방이관실태 감사시 확정된 지방위임 추진대상사무중 미조치사무(소관부처 추진확정사무에 한함)
  - '91 ~ '93년중 각 부처에서 행정쇄신과제로 선정한 위임. 위탁 대상사무중 미조치사무
  - 기타 각 부처에서 '94년도중 위임 또는 위탁하기로 확정한 사무

4

#### 협조사항

- 각부처는 금년도 정부조직관리가 본지침에 따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내무부와 교육부는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도 본지침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

# 사무구분 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발굴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판단기준을 개별단위사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1. 전국적 통일성 대 지역성

- (1) 국가의 종합적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업무인가? (중앙)  
지역의 개별적 이해관계·편의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가? (지방)
- (2) 사무처리 기준의 통일적인 설정 및 적용이 필요한가? (중앙)  
사무처리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지방)
- (3) 사무효력 (사업의 결과 또는 파급효과)이 전국적인가? (중앙)  
사무효력 (사업의 결과 또는 파급효과)이 지역적인가? (지방)
- (4) 주민의 이해관계가 간접적인가? (중앙)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인가? (지방)
- (5) 지역주민의 참여 필요성 (또는 장소적 근접성)이 적은가? (중앙)  
지역주민의 참여 필요성 (또는 장소적 근접성)이 많은가? (지방)
- (6) 필요한 정보의 수집대상이 전국적인가? (중앙)  
필요한 정보대상이 지역적인가? (지방)

## 2. 경제적 효율성

- (1) 광역적·대규모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경비절약·능률성제고 등 이익이 있는가? (중앙)
- (2) 당해 자치단체외에 다른 자치단체에까지 외부효과가 미치는가? (중앙)
- (3) 자치단체간의 경쟁효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 (지방)
- (4) 지역적 실험의 필요성이 있는가? (지방)

### 3. 업무수행능력 (수용태세)

1. 사무수행을 위한 예산. 정보. 기술수준 고려시 지방에 의한 업무수행이 곤란한가? (중앙)
2. 사무수행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능력이 충분한가? (지방)
3. 자치단체 스스로 또는 국가의 보완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인가? (지방)
4. 사무이양시 예산. 인력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가? (중앙)
5. 사무이양시 발생하는 예산. 인력을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는가? (지방)

### 4. 지역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1.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무인가? (중앙)  
자치단체간 형평성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사무인가? (지방)
2. 제3자적 공정성이 필요한가? (중앙)  
제3자적 공정성이 덜 필요한가? (지방)

### 5. 정책적 성격 대 집행적 성격

1. 일반적인 기준. 요건. 범위의 설정 등 정책수립 업무인가? (중앙)
2.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만 하면 되는 사무인가? (지방)

【 서식 1 】

## 지방이양 대상사무 총괄표

부처명 :

(단위: 건)

코 드	검 토 유 형	계	이 양 유 형		
			이양완료	이양동의	이양부동의
계					
A	『중앙·지방사무 총람』 상의 기관위임사무 (지방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중 '93년도 합동심의회에서 이양부동의된 사무는 제외시킴				
B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되어 있으면서 개별법령에 의하여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				
C	국가직접처리사무중 자치단체로 이양할 사무				
D	기 타				

※ 조사표작성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총무처 조직국 조사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 720-2063, 구내 : 2931)

【 서식 2 】

## 기능이양검토의견서

부처명 :	작성자(담당사무관)		실 국	과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TEL 구내 )	일반
(1) 검토유형 코드번호	A, B, C, D	(2) 일련번호 (코드별)		(3) 이양유형	이양완료( ) 이양부동의( )	
(4) 단위사무명						
(5) 사무개요 (관계법령포함)						[ ° ° 법 ° ° 조 ° ° 항 ]
(6) 기관위임 사무의 경우 위임근거	개별법령 또는 위임위탁 규정					
(7) 중앙부처 검토의견	① 이양여부	동 의 ( )	부 동 의 ( )			
	② 동의 및 부동의 사유					
(8) 기대효과(동의시) 및 문제점(부동의시)						
(9) 이양계획년도						
(10) 이양부동의 경우 장기적 대책						

※ 조사표작성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총무처 조직국 조사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 720-2063, 구내 : 2931)

< 서식 2호 작성요령 >

- (1) 검토유형 코드번호 : A. B. C. D 중 해당코드에 ○표 할 것

A : 『중앙. 지방사무 총람』 상의 기관위임사무 (지방위임사무)

B :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사무로 예시되어 있으면서 개별법령에 의하여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

C : 국가직접처리사무중 자치단체로 이양할 사무

D : 기타

- (2) 일련번호 (코드별) : 일련번호는 해당코드별 (4) 번의 단위사무명 순서임

(예: A-1, B-2, C-5)

- (3) 이양유형 : 이양완료. 이양동의. 이양부동의로 구분하여 해당란( )에 ○표 할 것

- (4) 단위사무명 : 법령상의 단위사무명을 기재 (예: ○○○의 허가, ○○○등록 등)

- (5) 사무개요 : 단위사무의 관련법령 조문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근거조항 표시)

반드시 처리권자(보사부장관, 시. 도지사 등)를 나타낼 것.

만일 법률에 처리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상의 법령내용을 기술할 것

- (6) 기관위임사무의 근거 : 해당 단위사무의 개별법령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규정상의 위임 근거조항(대통령령)을 정확히 기재

- (7) 중앙부처 검토의견 : 이양동의. 부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그 동의 또는 부동의 사유를 요약하여 기술할 것

- (8) 기대효과 및 문제점 : [동의] 시는 기대효과를, [부동의] 시는 이양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설득력있고 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

- (9) 이양계획년도 : 주무부처에서 자치단체사무로 이양하고자 하는 시기  
(예: '94년 상반기, 하반기)

- (10) 이양부동의 경우 장기적 대책 : 지방에 이양함이 현재로서는 곤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은 장기검토대상으로 의견제시

[ 서식 3 ]

## 자치단체 지방이양 희망사무 조사표

제출기관명 :		작성자 (담당사무관)		실	과	○	○	○	(TEL	일반	구내	)
(1) 검토유형 코드번호		A, C, B, D	(2) 일련번호 (코드별)		(3) 이양받을 : 시.도 자치단체 시.군.구		{ }					
(4) 단위사무명												
(5) 사무개요 (관계법령포함)		[ ○ ○ 법 ○ ○ 조 ○ ○ 항 ]										
(6) 기관위임 사무의 경우 위임근거	개별법령 또는 위임위탁 규정	[ ○ ○ 법시행령 (위임. 위탁규정) ○ ○ 조 ○ ○ 항 ]										
(7) 관련중앙부처 (관련업무)												
(8) 그동안 지방에 이양이 안된 사유												
(9) 자치단체 검토의견	① 이 양 건의사유											
	② 이 양 후 기대효과											

\* 조사표작성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총무처 조직국 조사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 720-2063, 구내 : 2931)

## 〈서식 3호 작성요령〉

(1) 검토유형 코드번호 : A. B. C. D 해당코드에 ○표 할 것

A : 『중앙. 지방사무 총람』 상의 기관위임사무 (지방위임사무)

B :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사무로 예시되어 있으면서 개별법령에 의하여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

C : 국가직접처리사무중 자치단체로 이양할 사무

D : 기타

(2) 일련번호 : 일련번호는 해당코드별 (4) 번의 단위사무명 순서임

(3) 이양받을 자치단체 : 이양을 받을 경우 처리주체를 시. 도 및 시. 군. 구 중의 해당란에 ○표 할 것

(4) 단위사무명 :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무명을 기입

(\* 단위사무란 ○○허가, ○○등록 등 개개사무명을 말함 : 법령조문을 참조)

(5) 사무개요 : 단위사무의 관련법령조문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근거조항 표시), 처리권자 (동력자원부장관, 시. 도지사 등)를 반드시 나타낼 것.  
만일 법률에 처리권자가 나타나지 않을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상의 법령 내용을 기술할 것

(6) 위임근거 : 해당 단위사무의 개별법령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규정상의 위임근거 조항 (대통령령)을 정확히 기재하되, 수임기관도 표시할 것

(7) 관련중앙부처 : 본 단위사무의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및 그 주관과를 기재하고, 관련업무를 간략히 서술

(8) 그동안 지방이양이 안된 사유 : 주무부처에서 이양을 기피하는 이유를 간략히 서술

(9) 자치단체의견 : ①번은 이양을 건의하는 사유, ②번은 이양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술

【 서식 4 】

지방이양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부처명 :	작성자 (담당사무관)	실	과 ○ ○ ○ (TEL 구내 )	일반
(1) 일련번호		(2) 대상사무명		
(3) 이양일자 (법령개정일)		(4) 이양사실 통보일		
(5) 통보관련근거 및 제목	① 관련근거 (문서번호) :			
	② 공문제목 :			
(6) 통보대상 자치단체	① 시. 도 :			(총 개 기관)
	① 시. 군. 구 :			(총 개 기관)
(7) 감독범위조정 통보내용 및 감독개선내용				
(8)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지원 사항	① 지침부여 ( 건)	② 교육실시	정 기 : 회	총 회
	③ 인력 ( 명)		수 시 : 회	
	④ 예산 ( 천원)	⑤ 정보. 기술제공 ( 건)		
(9) 실태확인 및 평가실시	① 실시년월일 :			
	② 주요내용 :			
	③ 자치단체 수용태세 :			
	④ 자치단체 건의사항 :			

\* 조사표작성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총무처 조직국 조사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 720-2063, 구내 : 2931)

< 서식 4호 작성요령 >

- (1) 일련번호 : 일련번호는 사후관리를 실시한 대상사무의 번호임
- (2) 대상사무명 : 사후관리의 대상사무명을 기재
- (3) 이양일자 : 주무부처에서 자치단체사무 (지방사무)로 관련법령을 개정 (이양) 한 일자  
(예 : ○○년 ○월 ○일)
- (4) 이양사실통보일 : 주무부처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이양사실을 공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한 일자(예 : ○○년 ○월 ○일)를 기재
- (5) 통보관련근거 및 제목 : 통보한 공문의 문서번호 및 공문의 제목을 기재
- (6) 통보대상 자치단체 : ①②번중 통보대상 자치단체 및 기관수를 기입
- (7) 감독범위조정 통보내용 및 감독개선 내용 : 주무부처에서 이양사무에 대한 감독 범위를 자치단체에 설정통보한 내용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관련 제도. 관행 등을 개선 (승인. 보고폐지, 사후보고전환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술
- (8)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지원사항 :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①번부터 ⑤번 까지의 사항을 기입한다.

(예) ①지침부여 (2건), ②교육실시 

정기 : 2회	총 3회
수시 : 1회	

 ③ 인력 (3명)  
④예산 (1,000천원) ⑤정보. 기술제공 (4건)
- (9) 실태확인 및 평가실시
  - ① 실시년월일 : 실태를 직접 조사한 년월일자
  - ② 주요내용 : 실태확인. 평가의 주요착안 사항
  - ③ 자치단체 수용태세 : 사무처리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지식, 능력정도등 파악
  - ④ 자치단체 건의사항 : 이양사무에 대한 자치단체 개선요구사항 및 기능이양과 관련된 제반건의내용 기재

【 서식 5 】

‘94 위임·위탁조치대상사무 및 그 조치계획

대상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위탁유형	대상선정구분	조치계획

〈 서식 5호 작성요령 〉

1. 위임·위탁유형란에는 지방위임(시·도, 시·도교육감, 시·군·구 등), 민간위탁(→○○공사, →○○협회 등)을 기재한다.
2. 대상선정구분란에는 감사원 확정, ’91 ~ ’92행정쇄신과제, ’93행정쇄신과제 등을 기재한다.
3. 조치계획란에는 「’94. ○월중, 법개정후 시행령 개정」, 「’94. ○중 관계부처 협의후 조치」, 「위임·위탁규정개정시 조치」 등으로 각 부처 조치계획을 시기·조치방법·선결사항 등과 함께 기재

## 정 비 대 상 위 원 회 목 록

## □ 폐지·통합대상(27개)

부서명	위원회	설치근거	조치	조치사유
경제기획원 (1)	사회간접자본투자조정위원회	훈령	폐지	설치목적달성
조달청 (1)	물품관리심의위원회	법률	'	협의체로 대체('91 정비대상이었으나 법개정지연)
총무처 (2)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	대령	'	운영실적 미흡('91 정비대상)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대령	'	운영실적 미흡('91 정비대상)
과학기술처 (2)	해양개발위원회	법률	통합	총리실의 해양정책조정위원회와 기능중복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	법률	'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기능수행 가능
외무부 (2)	해외이주정책심의위원회	법률	'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로 흡수 통합
	한미관계발전위원회	임의설치	폐지	실적 미흡(특별한 안건없는 간담회 수준, 회의로 대체)
내무부 (1)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법률	통합	오지개발심의위원회 흡수 통합
재무부 (3)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	법률	폐지	국민투자기금 축소에 따른 위원회 실효성 상실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원회	법률	'	실적이 전혀 없음.
	외자도입심의위원회	법률	'	경제장관회의와 기능중복 및 실적 미흡
국방부 (1)	정발재산심의회	법률	'	'91 폐지대상(기해체, 법개정시 반영)
교육부 (2)	과학교육심의회	법률	통합	중앙교육심의위원회의 과학기술분과위로 대체(과학교육진흥법 개정시 반영)
	중앙산업교육심의회	법률	'	중앙교육심의위원회의 과학기술분과위로 대체(산업교육진흥법 개정시 반영)
농림수산부 (5)	농지개발심의위원회	법률	폐지	설치목적달성(산지개발에 대한 심의사항이 없음)
	중앙농지위원회	법률	'	농지개혁 사업의 종결
	농수산물가격심의위원회	법률	'	운영실적 부진('91 폐지대상)
	낙농심의회	법률	'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이관예정(법개정시 반영)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	법률	'	민간주도의 수출협의회로 대체(법개정시 반영)
산림청 (1)	중앙화전정리심의위원회	법률	'	화전정리 사업완료
상공자원부 (3)	염업심의회	법률	'	실적이 없음(염관리법 개정시 반영)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법률	통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능수행('91 폐지대상)
	광업개발심의회	법률	폐지	광업조정위원회의 활용(법개정시 반영)

부서명	위원회	설치근거	조치	조치사유
특허청 (1)	발명보호위원회	법률	통합	실적 미흡(대체 입법 추진중)
건설부 (2)	유료도로심의회	법률	폐지	존치 불필요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	대령	통합	지역균형개발심의회로 통합

□ 직급조정대상(7개)

부서명	위원회	설치근거	조치	조치사유
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심의회	법률	위원장 및 위원 직급하향조정	위원장(국무총리) 및 정부측 위원(장관 급 4명)의 직급이 높아 차관보, 국장이 매년 대리참석 또는 불참 (위원장:국무총리→장관 위원:장관→1급공무원)
	농업관측협의회	부령	위원장직급 하향조정	업무성격상 농산물 품목별 협의로 운영 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직급 하향조정 (위원장:차관→국장급 위원:국장급→과장급)
	초지조성심의위원회	법률	위원장 및 위원 직급하향 조정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 (위원장:차관→차관보·국장 위원:국장급→과장급)
	사료품질관리위원회	법률	위원장직급 하향조정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위원장:차관급→차관보·국장급 위원:국장급→과장급)
상공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 심의회	법률	위원장직급하향 조정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함 (위원장:국무총리→경제기획원장관)
건설부	중앙지명위원회	법률	위원장직급 하향조정	지명제정 및 변경등 전문성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므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장 직급을 차관에서 국립지 리원장으로 조정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법률	위원장직급 하향조정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이 목적이므로 위원장직급을 차관에서 차관보로 하향 조정

목록 2

지방이양 관련목록 (별책)

1. 이양완료 사무

2. 이양동의 사무

3. '93년도 제출했던 이양희망사무

※ 중앙부처는 이양동의 사무 목록의 법령개정 여부 및 계획을 제출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이양완료 및 동의된 사무와 '93년도 제출했던 이양희망사무를 제외한 이양희망사무를 제출한다.